#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83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용혜인·신정훈·김문수

위성곤 • 황명선 • 정성호

김종민 · 이재관 · 조 국

유준병 • 염태영 • 한창민

추미애 • 이광희 • 모경종

천하람 • 송재봉 • 전종덕

문진석 의원(19인)

###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 10월 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 그러나 현재 여순사건 위원회에 전체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처리된 건은 710건에 불과함.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간 연장 없이는 사건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러한 여순사건 위원회의 낮은 사건 처리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견제하거나 시정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 등 유사 입법례는 관련 위원회가 국회에 매년 위원회 활동을 보 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단 9회만 개최되었고, 그 중 6회가 서면 회의로 진행되는 등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 및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에 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여수· 순천 10·19사건의 충실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기간을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5조제2항).
- 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7조제1항).
- 다.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제3조제5항).

- 라. 위원회가 활동경과를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 록 함(안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 마. 위원회에 독립적 업무 수행 및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의2).

#### 법률 제 호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 2. 국회가 추천하는 6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 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 한다)
- 3. 유족 대표
- 4. 그 밖에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1년"을 "4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보고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 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

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

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개 정 안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 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 2. 국회가 추천하는 6명(대통령 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 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⑤ ~ ⑨ (생 략)

<신 설>

-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 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 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 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 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 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 다.
  - ② ~ ⑤ (생 략)

3.	유족	대표
Ο.	11 1	- 11 -11-

- 4. 그 밖에 여수·순천 10·19 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 제3조의2(위원회의 독립성) 위원 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 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현행과 같음)
  - --<u>4년</u>-----.
    - ③ (현행과 같음)
  - 집 및 분석) ① -----

    - -----<u>5년</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u>(진상조사보고서 작성)</u> <u><신</u> <u>설></u>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보고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
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②</u>
<u>작성하여 국회</u>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u>.</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